

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

의안번호	제 348 호
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04. 3. // .

제 출 자: 고 성 군 수

1. 제정이유

- 기존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및 유사한 위원회의 난립으로 행정, 경제적 낭비와 비효율적 요인이 잔존하고 있어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으로
-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조례 제정에 맞추어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 『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』로 통합하여 급증하는 주민복지 욕구에 탄력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기존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, 고성군보육위원회,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,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, 고성군아동위원회,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신설 예정인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『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』 1개의 위원회로 통합운영하되, 유사한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운용·관리함(안 제2조)
- 기금 계정과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생활보장분과위원회, 여성아동분과위원회, 노인복지분과위원회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세분화·전문화 함 (안 제2조)
-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, 고성군보육위원회, 고성군아동위원회,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,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,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각각 폐지함 (안 부칙 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, 장애인복지법 제9조, 영유아보육법 제4조, 의료급여법제6조, 아동복지법제6조

나. 입법예고 (2004.2.12 ~ 2004.3.3) 결과 의견없음

4. 본문 : 붙임

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와 장애인복지법제9조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, 영유아보육법제4조, 의료급여법제6조, 아동복지법제6조,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등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
1.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 수립에 관한사항
2. 사회복지사업 및 중요사업에 대한 연구, 조정, 정책·제도 도입
3.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

②위원회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유사 기금별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.

1. 생활보장분과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·의결 한다
 - 가.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계획 및 기금 운용에 관한사항
 - 나.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 예산지원에 관한사항
 - 다.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사항
 - 라. 의료급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관한사항
 - 마. 의료급여기금 운용에 관한사항
 - 바. 기초생활보장기금 (자활공동체지원, 저소득주민생활안정용자금) 운용에 관한사항
 - 사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규정에 관한사항
 - 아.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사항
 - 자.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
2. 여성·아동분과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·의결 한다

- 가. 여성정책발전기금 운용에 관한사항
- 나.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 개발, 연구
- 다.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에 관한사항
- 라. 아동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사항
- 마.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

3. 노인복지분과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·의결 한다

- 가.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사항
- 나. 노인복지법에 정한 노인복지시책 건의 및 개발, 연구
- 다.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수, 부군수, 기획감사실장, 사회복지과장, 보건소장으로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

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군수, 기획감사실장, 사회복지과장, 보건소장은 각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을 겸임하며, 위촉직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 다음 각항의 분과위원회별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생활보장분과위원회, 여성·아동분과위원회는 15인이내, 노인복지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하며 분과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.

④ 생활보장분과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.

1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
2.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
3.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
4. 행정기관 소속공무원
5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

⑤ 여성·아동분과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.

1. 여성단체협의회회장
2.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성대표
3. 여성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
4.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, 보육종사자 대표, 보호자 대표
5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

⑤ 노인복지분과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.

1. 노인복지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
2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해촉) 군수는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장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

③분과위원장등의 직무는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7조(회의 및 의사) ①위원장,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/3이상 위원 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소집한다

④위원회,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

⑤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제8조(간사) ①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둘수 있다.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사회복지담당자가 된다.

②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의 기금 계정별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기금계정별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.

제9조(실비지급)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성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규정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조례의 개정)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제9호 및 제14호는 삭제한다.

③ (다른 위원회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,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, 고성군 아동위원회, 고성군보육위원회,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각각 폐지한다.